

예산총칙

2026년도 본예산

제 1 조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603,992,038	18,119,761
일반회계		535,311,534	16,059,346
특별회계		68,680,504	2,060,415
	공기업특별회계	57,750,591	1,732,518
	상수도사업특별회계	32,867,246	986,017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4,883,345	746,500
	기타특별회계	10,929,913	327,897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2,851,470	85,544
	주차장사업특별회계	1,295,422	38,863
	도시재생특별회계	453,477	13,604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982	29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6,328,562	189,857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6,146,820천원(일반예비비 4,700,000천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 1,313,020천원, 내부유보금 133,800천원)으로 한다.

제 4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공기업 특별회계 포함) 지방채차입한도액은 30,100,000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 2 규정에 의해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재무활동경비, 동일부서에서 동일부문에 있는 정책사업간 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